

北韓의 法(學) 體系 概觀*

朴 秀 赫

- | |
|--------------------------------------|
| I. 머리말
II. 북한법(학)의 체계
III. 결 론 |
|--------------------------------------|

I. 머리말

법(학)의 학문성은 다른 학문에서도 그러하지만,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오염되어 변질되어 있고, 또 낙후되어 있다. 그 결과 북한 법학의 학문성과 체계성을 북한법과 구별하여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교수는 「북한의 법학에 대하여 한국의 법학자라면 누구나 현재 통일을 이 연구는 북한의 학문체계 가운데 북한법(학)체계에 관한 것이다. 북한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문화와 학술교류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정보 내지는 연구과제」¹⁾ 라 하고 있다. 또 그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완성되었음.

1) 최종고,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 『북한의 법과 법이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시리즈 10), 3~4면.

는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북한법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단계라고 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뿐 자료와 정보가 없어 북한법학의 실상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법학의 실상과 그 정보 및 자료의 빈곤 때문에 거의 모든 연구논문이 북한법학이 아닌 북한법을 연구대상과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바, 이 글에서도 북한법학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제는 3년동안 계속될 다년간 연구과제인데, 그 1차년도의 연구과제에 해당한다.

II. 북한법(학)의 체계

1. 형성의 역사

1) 시대구분

북한은 스스로 북한의 법제정의 역사를 주체의 법제정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1986년 출간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법사상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법의 제정시기에서 이룩된 전통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제정 실시해 온 주체의 법제정력사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제정의 전역사적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법사상과 이론을 구현하여 온 과정이며 공화국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떠밀어 온 과정이다.”¹⁾

1) 홍극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 4.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정의 역사를 통일적으로 서술한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이다. 이 책은 북한의 법제정사를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²⁾

- 제1단계 :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 제2단계 : 반제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의 법의 제정실시
- 제3단계 :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적 첫시기의 법의 제정실시
- 제4단계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 제5단계 :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의 시초건설시기 법의 제정실시
- 제6단계 :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법의 제정실시
- 제7단계 :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그러나 1984년에 출판된 다른 책에서는 북한의 법체계의 정비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³⁾

- 제1단계 : 민주주의적 법건설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시기
- 제2단계 : 민주개혁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독창적인 법의 제정집행 시기
- 제3단계 :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인 법의 제정집행 시기
- 제4단계 :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주체적인 법의 제정실시 시기

2) 홍극표, 위의 책, p1 - 3.

3) 서창섭, 「법건설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4. p.7.

한편 1960년대에 출판된 책에서는 북한법 체계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다루고 있었다.⁴⁾ 즉,

제1단계 : 평화민주적 건설단계

제2단계 : 조국해방전쟁단계

제3단계 : 전후 사회주의의 건설과 인민경제의 회복단계

이렇게 본다면 북한법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학자들도 어떤 확정된 기준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색은 법의 발전단계를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 맞추어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법의 형성과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일제시의 항일혁명투쟁시기에까지 소급하여 북한법의 형성과정으로 받아드리고 있으나 북한법의 형성과정의 시점을 보장 정확하게 확정한다면 8.15해방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법의 형성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8.15해방직후의 시기
2. 1948년 헌법의 제정실시 시기
3. 6.25한국전쟁기
4. 전후의 경제건설기
5.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이후 시기
6. 최근의 입법동향

2) 8.15해방직후 북한법의 형성과정

북한 지역이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된 후 전 북한 지역에 대한 지배

4) 안우형(편), 『우리나라 법의 발전』, 1960(강구진, 북괴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1975, p. 9. 재인용).

력을 갖춘 북조선임시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46년 2월 8일 이었다. 한편 홍극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는 1932년 말 김일성이 두만강 연안에서 인민혁명정부를 구성하고 인민혁명정부의 정강과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 지시, 명령, 선언, 포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법제상의 최초의 중요한 입법은 1945년 11월 16일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2호로 나온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다. 이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 법령 중 성질상 신국가 건설 내지 조선고유의 민정과 조리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내지 조항을 제외하고 그 외의 법령은 신법령을 발포할 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함”

이 포고의 의의는 8.15해방 후에 북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법 가운데에서 일부의 법령은 폐지하고 일부의 법령은 존속시켜 법의 공백을 허용하지 아니한 데 있다. 또한 사법국 포고에 의하여 재판소와 검찰소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 전역에 효력을 가진 법령으로서는 북조선 행정국의 결정, 포고, 지시, 규칙 및 포고 등이 있었다.

법률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북조선임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후이다. 북조선임시위원회는 결정 또는 포고의 형식으로 수많은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법령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북조선 도, 시, 군, 면, 리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북조선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북조선 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판사선거에 관한 결정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사업, 교통운수, 채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북조선회계규정

세금징수에 관한 규정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사회보험법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식량배급에 관한 건

상업기관에 관한 명령

공업허가령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생명, 건강, 자유, 명예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 그것이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의 법령의 목적은 인민정권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⁵⁾ 일제의 잔재를 숙청하는데 있다⁶⁾고 한다.

물론 이 때까지 북한에서는 헌법에 제정되지 않았으며, 헌법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1946년 3월 김일성이 발표한 20개조 정강이 있었다. 이 정강은 일제통치의 잔재숙청, 언론·출판·집회·신앙의 자유보장, 참정권 보장, 평등권의 보장, 대기업의 국유화, 8시간 노동제, 교육제도의 개혁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의 여러 법령도 이 정강에 기초하고 있다.

1947년 북조선임시위원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변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북한에서 시행할 법령을 일부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법으로는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상호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에 관한 결정서, 전국 로력동원에 관한 규정, 북조선에 유

5) 홍국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p. 34.

6) 위의 책, p. 69.

통합 신화폐 발행과 현행 화폐 교환에 관한 결정, 세금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3) 1948년 헌법의 제정 및 실시 시기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하여 북한의 헌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였다. 여기에서 작성된 헌법초안은 북조선최고인민회의 제1기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1948년 북한헌법이다.

이 헌법은 소련의 스탈린헌법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주의 헌법을 그 발전의 단계에 따라 인민민주주의 단계, 사회주의 단계 및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로 구분한다면, 1948년의 이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단계의 헌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헌법은 소자본가, 지주적 사유제도 및 지주적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 기업체제기 일부 인정되는 일면, 노동자 계급이 부르조아 또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⁷⁾

1948년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만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의 숫자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법령은 내각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령으로는 전반적 초등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법령, 재판소구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북반부에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1948년 계획실행총결과 1949년 - 1950년 2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 등이 있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령으로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규정, 시, 군 인민재판소 및 도 재판소선거에 관하여 등이 있다. 또 내각 결정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서 노동자 임금적용에 관한 규정, 증산 경쟁운동에 관한 결정서,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 탁아소에 관한 규정 등이 있

7) 최송하, 북한의 헌법과 통치구조, 최명(편), 『북한개론』, 율유문화사, 1990, p. 30.

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법령의 특징은 인민민주주의를 사회주의혁명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일제의 낡은 법률잔재를 청산하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한다.⁸⁾

4) 6.25 전쟁기의 법의 형성

6.25 전쟁 중에는 북한을 전쟁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쟁수행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최고인민위원회가 제정한 법령은 그의 없고 주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의 형식으로 법령이 형성되었으며, 전시상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입법도 이루어졌다.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당일 내각은 리승만괴뢰정부의 국방군의 불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전시상태에 관하여 및 조선민주주의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하여 등의 내각 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전시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함에 관하여 등을 채택하여 전쟁을 지원하였다.

한편 내각은 중요 내각 결정 집행정형에 관하여, 조국보위 복권 발행에 관하여, 협동단체들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하여, 전제민 구호에 관하여 등을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군사위원회는 전방구호대를 조직할 데 관하여, 전상자 치료사업을 보장할 데 관하여, 화학비료 수송 및 공급에 관하여 등의 명령을 채택하고, 군사동원에 관한 규정, 전시로동에 관하여 등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시기의 북한의 법령 중에서 특기할 사실은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

8) 홍국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p. 100- 101.

있던 시기인 1950년 7월에서 9월까지 남한에서 실시할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서는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 공화국 남반부 해방지역의 군, 면, 리 인민위원회 선거실시에 관하여가 있고, 내각 결정으로서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 해방지구에서 공화국의 인민적 민주교육제도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있어서 농업현물세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 등이 있다.

5) 전후 경제 건설기의 법의 형성

이 시기는 전후에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기까지의 약 20년의 시기이다.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의 인민경제 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⁹⁾ 그러나 북한이 법의 형성에 있어서는 북한의 학자가 구분하는 시기 간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양자를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법령이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으로 법제를 정비하였다. 즉, 첫째, 전시 동안의 국가비상동원체제에서 전후 평상시의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관의 사업개편과 역할제고를 위한 입법정비, 둘째,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협동경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셋째, 사회주의적 공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넷째, 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과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법제를 정비한 후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에 매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며,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 개선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9) 홍극표, 앞의 책, 차례참조.

기술재건을 위한 법제정비를 서둘렀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제정된 법령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법령으로는 지방주권기관구성법, 내각구성법, 1954 - 1956년 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하여, 인민경제발전 제1차5개년계획에 관하여,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대하여,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 주민소득세에 관하여, 지방자치제에 관하여,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할 데 대하여 및 경제발전 6개년 계획에 대하여 등이 있다.

인민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는 군사위원회 폐지에 관하여, 도, 시, 군 인민회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가 건설위원회를 조직함에 관하여, 최고인민위원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내각의 결정은 주로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한 내각의 결정으로는 농업협동 경리의 강화발전 대책에 관하여, 협동조합기준규약, 협동단체들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하여, 조선 생산협동조합 기준 규약, 국영기업소에 관한 규정, 상품유통부분 사업 개선대책에 관하여,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관하여, 경공업부분의 지도기구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하여,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법령집행 대책에 관하여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북한에서의 법형성의 특징에 대하여 북한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공화국법은 이 시기에 나서는 중요 과업에 당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고 전면적 기술개선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중요하게 복무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의 법제정의 기본방향을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법규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법규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들,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전면적 기술개선을 다그치기 위한 법규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는 데 돌려졌다.¹⁰⁾

6)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시기의 북한법의 형성

정권수립 이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건설에 매진해온 결과 1970년대 초에 북한은 북한사회가 인민민주주의의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사회주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61년 소련이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선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시기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라고 명명하고 이 시기의 법제의 형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에 나선 기본과업은 국가경제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여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아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과업실현의 요구에 맞게 이 시기에 법분야에서는 주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국가경제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법규들, 사회혁명을 심화시키기 위한 법규들,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기 위한 법규들,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며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한 부문법전들을 제정실시하였다.¹¹⁾

10) 홍극표, 앞의 책, p. 187.

11) 홍극표, 앞의 책, p. 224.

이 시기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어 북한의 전국가 체제가 사회주의적 주체사상의 국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의 유형상 정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완성하고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의 국유 및 전인민적 계획경제제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사회주의헌법」으로 설명된다. 북한이 이 헌법을 제정한 동기는 사회주의가 발전하면서 인민민주주의 원리의 근거하여 제정된 1948년 헌법을 수차례 개정하였으나 주체사상이 등장하고 과거의 헌법이 국가와 당에 대한 조항이 미비한 등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새로운 사회주의 원리에 근거한 헌법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다.¹²⁾

사회주의 헌법에서 법률의 제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이외에 주석의 명령,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 정부원의 결정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활발한 입법활동이 행해져서 많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법보다 발전된 형태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법령으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데 대하여,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민사소송법, 토지법, 노동법, 어린이 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해운법,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계획에 대하여,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 합영법,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 북과 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항만법,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 계획에 대하여, 철도법, 과학기술법 등이 있다.

주석의 명령으로는 자원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벌금규정을 채택할 데 대하여, 기계부속품을 규격화할 데 대하여, 학교건설에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

12) 최송화, 북한의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p. 103.

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등이 있으며,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는 공업상품의 값을 낮출데 대하여, 민사규정 등이 있다.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무원의 결정으로서서는 행정경제 부문의 관리규범을 승인함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 데 대한 기술혁명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등이 있다.

7) 최근의 입법동향

1980년대 후반 이후 동구권의 몰락, 중국의 개방화, 소련의 붕괴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북한도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의 노선을 수정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처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헌법과 대외관계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령들을 대폭 개정하여 입법적 대응도 새로이 모색되었다.¹³⁾

1986년 환경보호법, 1987년 형법 개정, 1990년 민법, 1992년 가족법, 1992년 사회주의 상업법, 1992년 도시경영법 등이 이러한 경향에 있는 법령들이다. 또한 북한은 1992년 4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은 과거 사회주의 헌법에서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체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계승하여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규정하여 북한의 독자성을 과시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입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외관계법의 확대이다. 1984년 최고인민회의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유치를 시도한 이래 일정부분 외국와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2년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은 북한이 경제고립을 탈피하려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어찌든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극복하고

13) 최종고, 북한의 입법동향과 법생활, 북한연구 3권 1호 1992. p. 90 - 108.

경제적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한 보고는 점점 비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그러나 이것이 대외적으로 법치국가임을 과시하기 위한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북한이 형식적 법령의 양산하고 있다는 허울을 벗겨주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법형성의 역사는 주체사상의 법적 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북한 자신의 표현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해방 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 사회주의 혁명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건설의 현시기에 이르는 전 역사적 기간에 진행된 우리나라 법제정의 주요 시기들과 그에 따르는 주 되는 내용들을 취급함으로써 공화국법의 제정 및 개선완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경도 밑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 온 법제정의 전 역사적 과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법제정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이었으며 주체의 법제정역사를 처음으로 창조하여온 영광찬란한 로정이다.¹⁵⁾

2. 북한법의 사상과 이론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사회주의 법계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국가의 기초로 삼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의 뿌리로 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때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법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맑스-레닌의 법에

14) 최종고, 북한법, p. 449.

15) 홍극표, 앞의 책, p. 287.

대한 태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맑스·엥겔스는 법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우선 법은 사회 내에서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하부구조인 경제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생성·변화·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법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관계의 부수적 현상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중립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지배계급이 부산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도구이자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제도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법은 결국 지배계급의 명령과 동일하다고 한다. 따라서 법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인 부르조아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공산사회주의가 도래하면 부르조아와 함께 법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법고사론이 주장되었다.¹⁶⁾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다. 즉, 이 때에는 부르조아법 전체는 파괴되지 않으며, 파괴되는 부분은 혁명이 성공한 부분, 즉 생산수단에 대해서만 폐지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존재하는 법의 성격은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자본가를 지배하는 도구이며, 법은 이제 프로레타리아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투쟁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이용된다는 것이다.¹⁷⁾ 그리고 공산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시기가 되면 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¹⁸⁾

한편 맑스·엥겔스의 이론에 의거하여 완벽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스탈린은 맑스·엥겔스의 이론에 따라 국가소멸론과 법소멸론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또는 법이 소멸하기 직전의 프로레타리아 국가가 이제까지 존재해온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전능한 것이 되어야 한

16) M. Cain & Hint, *Marx and Engels on Law*,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pp. 103-104.

17) V. I. Lenin, *Staat and Revolution*, in ; C. Tucker, *Lenin Anthrology*, 1975, p.377.

18) 레닌, 앞의 글, p. 380.

다고 역설했다.¹⁹⁾ 스탈린 시대에 소련의 법학을 주도한 비신스키는 공산주의 제1기의 법이 부르조아법이라는 이론을 부정하였다. 그는 법이 단순한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단순한 생산관계의 반영이며 장래에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 모두에 반대하였다. 그는 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법은 사회관계의 체계도 아니고, 생산관계의 형태도 아니다. 법은 행위규칙 또는 규범의 총체이지만 규범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확인되고 강제적으로 보호되는 관습 및 공동생활 규칙의 총체이다.²⁰⁾

정권이 수립될 당시부터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한은 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1971년 출간된 북한 법학사전은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은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생활관계와 법질서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 공포하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의 준수가 담보되는 행위준칙의 총체이다. 법은 사회의 계급으로서의 분열과 함께 발생한 계급사회의 산물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한 일정한 질서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반영한 관습에 의하여 규제되었으며 사회 전체구성원들은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켰다. 따라서 관습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전문적 강제기관이 없었다. 그러나 사적 소유가 발생하고 적대되는 계급이 생기면서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한 권력기관인 국가가 생겨났으며 이와 함께 착취계급에게 유리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행위규범인 법이 생겨났다. 즉 법은 계급이 발생하고 적대되는 계급들간의 치열한 투쟁이 있게 되면서 국가와 함께 지배계급의 독재수단으로 생겨난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철저히 계급적

19) 1930년 당중앙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한 정치보고서 참조(Hugh W. Babb, *Soviet Legal Philosophy*, 1951, p. 235).

20) A. Y. Vyshinsky, *Fundamental Tasks of Soviet Law*, H. W. Babb의 위의 책, p.337.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법은 계급이 존재하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계급지배의 무기로 있게 된다. 법은 일정한 사회경제제도를 반영한다. 법은 토대 위에 선 상부구조적 요소의 하나로서 지배계급이 옹호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²¹⁾

이러한 북한의 법에 대한 설명은 사회주의 법에 대한 일반적 관념과 완전히 동일하며, 자본주의 법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을 김일성의 교시와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가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며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모든 국가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복무한다.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반드시 필요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복무한다.²²⁾

또한 북한은 법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주의 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반영으로서 모든 착취사회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의사를 대표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한다. 사회주의법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투쟁에 복무한다. 그것은 밖

21) 『법학사전』, 1971, p. 276.

22) 『법학사전』 p. 277

으로부터 기어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반이 주장한 준법성과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구호는 본질상 부르조아지가 자기 법의 계급적 본성을 숨기고 근로인민을 속여 그들을 부르조아법 밑에 순종시키기 위한 기만적 행동의 되풀이이다.²³⁾

북한의 법에서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규범생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주민들을 교시와 운동을 통하여 단속하는 제어장치이다.²⁴⁾ 이에 관한 북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법의 진압적 기능 실현수단으로서의 제재는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과 투쟁하는 데 지향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현수단이라면 사회주의법의 통제적 기능 실현수단으로서의 제재는 근로자들이 내부에 존재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데 지향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현수단이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법의 진압적 기능 실현수단으로서의 지배가 적대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주의법의 통제적 기능 실현수단으로서의 제재는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 빼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위법현상을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다.²⁵⁾

이와 같이 북한의 법이 혁명과 건설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윽게 관리 운영해 나가기 위한 통제를 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별하고,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 있다.²⁶⁾

23) 『정치사전』, 1973, p. 461-663.

24) 김일성,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p.2(金奎昇,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법과 司法制度, p. 220).

25) 리영애, 사회주의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론문집 제7집, 1990, p.19.

26) 최종고,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 p. 16.

3. 북한법의 체계와 구조

1) 일반법원칙

북한의 법학이나 법체계는 개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 등 사회(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마르크스 레닌 법(학)의 체계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법(학) 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법원리칙으로서는 러시아 등 사회(공산)주의 국가들과 같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근로자 주권주의, 사회주의의 실현, 프롤레타리아 독재, 主體사상, 사회주의 多黨制, 공산당(勞動黨)의 주도적 역할, 권력 집중(통합)주의, 민주적 중앙주의, 계획경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²⁷⁾

따라서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공산)주의 국가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권자로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제도도 공산주의와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를 포기하고, 민주적 중앙주의를 채택한 바 있다. 특히 경제질서는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헌법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은 그 국가이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이론은 레닌의 반국가, 스탈린의 새로운 국가를 거쳐 후루시초프의 전인민국가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이론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일정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발전된 것이다. 또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은 이러한 국가이론의 발전에 상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레닌의 반국가개념과 인민민주주의 헌법, 스

27) 박수혁, 남북한 국회회담에 있어서의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1985~1986년도 의회발전연구회 지원 연구논문, 3~36면 ; Brunner, Georg, Einführung in das Recht der DDR, 2. Aufl. 등 참조바람.

탈린의 새로운 국가개념과 사회주의 헌법, 후루시초프의 전인민국가개념과 발전된 사회주의 헌법이 그것이다.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주권, 소비에트체제, 공산당의 권력독점, 군력집중주의,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의제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일반화 교조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정치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였으며, 관료주의가 국가적 행정적 공적 업무에서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경제와 비능률과 저하를 초래하는 등 사회주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였다고 비판되었다.

사회주의의 왜곡을 시정하고 사회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수행된 소련의 개방개혁정책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도 사회주의의 일반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가관념을 전제로 하여 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관념이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이었다. 그리고 이 관념에 근거하여 제정된 헌법이 고르바초프의 1992년 헌법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역쿠데타에 의하여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엘친이 집권하였다. 엘친이 주도한 러시아 신헌법은 사회주의가 전제한 고정화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복수정당제, 권력분립제, 자연연적인 기본권 등을 규정하여 사회주의를 포기하였다.

한편 중국은 1988년 헌법을 개정하여 개방과 개혁방침을 확고히 했다. 천안문사태를 겪은 중국은 1993년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체제의 안정과 경제개혁의 가속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이론을 확고히 하고 있다.

북한 헌법도 사회주의의 영향 아래 북한이 인식하는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발전되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실시를 규정한 1948년 헌법과 사회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선언한 1972년 헌법이 그것이다.

한편 1992년 헌법은 북한이 사회주의 제국가와 구별되며, 북한 사회의 발전단계는 일반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단계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이는 표면상의 선언일 뿐이다. 이는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도 추론될 수 있다. 북한헌법의 기본원리로서는 근로인민주권주의, 노동당의 권력독점주의, 권력집중주의, 사회주의적 다당제, 민주주의 중앙집중제 등을 들 수 있다.

1992년 북한 헌법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인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²⁸⁾ 이러한 근로인민주권 개념은 계급대립을 전제로 하여 피착취계급으로서 근로인민만이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때의 주권자의 개념에는 질적 양적인 제한이 있게 된다.²⁹⁾ 그리고 근로인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표기관으로 근로인민주권주의를 정치적 및 이념적으로 실현하는 통일적 기초이다.³⁰⁾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헌법상 조선로동당의 영도적 지위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며³¹⁾,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대

28) 이 조항은 구헌법의 주권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제7조)에서 병사를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인민을 추가하여 구헌법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9) G. Brunner, Einführung in das Recht der DDR, 2Auf., S. 51f.

30) 이에 상응하는 구동독의 조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 deutsche Beziehungen(Hrsg.), Mater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2, S. 9f.

31)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p. 100.

이다³²⁾.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로동당은 다른 공산국가에서와 같이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며 모든 국가적 및 사회적 조직의 지도적 핵심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로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³³⁾

북한 헌법도 의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되어 있고,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가 되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은 국가주석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에 대한 지도권, 국가기관구성권, 법령 등의 제정권, 특사권, 외교조약의 비준 및 폐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주석은 형식적으로 최고회의에서 선출되고 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실제로는 당의 최고권력인 총비서는 국가주석을 겸하고 있어 북한의 헌법은 국가주석 1인 독재체제의 헌법규범화하고 할 수 있다.³⁴⁾

북한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복수정당제가 존재한다. 즉 신헌법 제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³⁵⁾

그러나 북한에서 로동당 이외의 정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로동당의 외곽단체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 정당의 외곽단체로서의

32)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p. 245.

33) 김영래, 북한의 당, 국가체제와 선거제도, 『북한의 법과 법이론』, p. 147.

34) 북한의 정치체제는 밀스(W. Mills)가 말하는 권력엘리트의 그것보다 훨씬 더 통합된 권력의 복합체로 되어 있다. C. J. Friedmann과 Z. Breznizski는 이것을 전체주의적 독재에 있어서의 그 극단적 변형이라고 하고 있다.(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총서』, p. 11)

35) 사회주의적 다당제에 대해서는 Dunke Fred, Das Mehrparteiensystem in der DDR, Der national Demokrat, 1963 참조.

역할은 1970년 11월 2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조선민주당 위원장 강양욱과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박덕신의 축하연설에서도 드러난다.³⁶⁾

북한 헌법 제5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가 국가의 조직원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이다.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는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혜와 비장의 창발성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원만히 발양될 수 있다고 하는 논설³⁷⁾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는 민주주의 보다는 중앙집권제에 중점이 놓인 국가기구의 조직 및 운영원리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헌법은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헌법의 전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인식하는 사회의 발전 단계와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규정하여 사회주의 제국가의 헌법 형식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외에 1992년 북한헌법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1992년 헌법의 일반적 특징으로서는 북한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북한을 격리시켜 북한이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제국가의 해체와 격리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당의 영도적 지도를 강화하는 등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36) 조선민주당은 일편단심으로 조선로동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에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양욱은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박덕신은 천도교청우당은 로동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이라고 하여 이 양당이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로동신문, 1970. 11. 3.)

37) 로동신문, 1971. 2. 4.

사회주의적 자립경제를 고수하는 한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했다.

둘째 현행헌법의 기본권 규정상의 특징으로서는 북한의 신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국적법률주의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신앙의 자유와 신소와 청원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구속금지와 살림집의 수색금지를 새로 규정했다. 국민의 의무에 관하여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민의 사회주의 혁명적 경각심의 고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사회주의적 법무생활을 강조하여 주민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셋째 권력구조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북한의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권력구조의 기본틀은 국가주석 중심의 유일지도체제였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은 국가주석의 권한을 축소하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위원회를 분리시켜 국방위원장에게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하여 유일지도체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 북한의 개정헌법은 중국과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과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구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는 개방 개혁을 주도하면서 헌법구조를 이에 상응하게 변화시켰으나, 북한은 오히려 개방과 민주와 추세를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 구소련 및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를 종식시키거나 당 군 정간의 권력구조를 재조정하여 이들 상호간의 권력분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은 당의 영도적 지위와 주체사상을 강조하여 국가주석 개인의 의견이 헌법의 최고원리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일인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구조는 사회주의 나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는 최고회의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거나, 권력분립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피하는 동시에 독자적 집단지배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북한은 주석의 유일지도체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국가권력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를 분명히 하여 헌법제도상의 다원화 경향이 실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넷째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구소련과 중국 등은 경제질서의 재편을 정치구조와 법질서의 재편을 통해 달성하거나 또는 정좌경우적 경향을 강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경제의 비능율과 저하를 방지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체제붕괴의 공포 속에서 효과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1992년 헌법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합법화시키고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규정상으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김일성의 사망 후 기금까지 김정일의 국가주석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에 대한 순조로운 권력승계와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의 유지는 고사하고 북한의 체제유지 그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민사법

민사법이라 함은 보통 민사에 관한 실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은 물론 상법 등 특별사법 외에 민사소송법 기타 민사절차법을 포함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2편, 소유권제도

- 일반규정
- 국가소유권
- 협동단체소유권
- 개인소유권

제3편, 채권채무제도, 일반규정

- 계약제도
 - 계획적 계약
 - 자재 및 상품공급, 농업생산물공급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운송계약

- 일반계약
 - 사고팔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 여객운송계약, 저금계약, 보험계약, 위임계약, 꾸기계약, 은행대부계약, 합동작업계약,

부당이득반환

제4편, 민사책임 및 민사시효제도 손해배상 및 위약금·연체료
민사시효제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민법은 판택텐체제로서 독일식 편별을 취하고, 맨 앞에 총칙규정을 두어 이를 민법 일반제도로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민법의 체계와 전혀 상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법의 체계가 우리 민법과 유사하지만 민법을 보는 시각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우리 민법과 판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이 동가보상적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의 민법을 보는 시각은 민법을 지배하는 원칙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 민법의 기본원칙은 (i)생산수단에 대한 사회

주의적 소유의 원칙, (ii)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 (iii)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원칙, (iv)사회주의적 준법성 보장의 원칙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⁴¹⁾

(i)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이 원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한 극히 당연한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서는 이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20조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민법은 사회주의적 공공소유의 대상과 개인적 소유의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생산수단의 종류와 소유자를, 제24조에서는 생산수단이 되는 재산의 내용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⁴²⁾

(ii)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

북한 헌법 제70조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고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침적 교시는 “나라의 재산, 사회의 재산은 전체인민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것보다 더 귀중합니다.”⁴³⁾라고 하여 사회주의적 소유가 개인의 재산보다 존중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모든 사람이 국가경리와 공동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를 높

41) 북한 민법 제1편 제1장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민법의 원칙은 7가지를 들 수 있으나, 북한 민법학은 이들 7가지 원칙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42)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법제에 있어서는 이 기본원칙의 철저성이 많이 완화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의 1982년 헌법은 제13조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43)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p.214.

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⁴⁴⁾라고 하여 그 구체적 실천방향까지도 제시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북한민법은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한 반환청구에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점유권에 대한 특별보호, 공공재산의 계획적이며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산관리질서의 확립, 공공기관의 채무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을 화폐자산에 한정시킨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iii)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통일적인 계획경제를 실행함으로써 그 지향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북한도 이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북한 헌법은 제3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임을 밝히면서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성장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획경제를 위한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북한의 민법도 필연적으로 계획경제의 실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민법 중 소유관계법에 관한 통일적이며 자세한 규정들과 자본주의적 계약이론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회주의계약의 채택 등도 이들 제도가 국가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iv) 사회주의적 준법성 보장의 원칙

44) 『김일성저작선집』 제4집 p.111.

북한 헌법 제17조는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원칙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 민법에 있어서 법률행위, 인민경제계획에 위반되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 타인의 재산을 불법점유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의 재판규정, 채무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정한 규정 등이 모두 이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제규정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규정, 부당이득반환규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은 개인의 보호,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면, 북한민법의 이들 규정은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과 확연히 구별된다.

(나) 북한의 가족법

가족법은 가족관계 즉 혼인, 부모와 자, 가족과 친척, 후견 및 부양 등 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가족법의 규제대상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가족법의 구성체계나 다른 부분법 즉 민법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달라지게 된다. 북한 가족법 제7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고 하여 그 규제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대상을 토대로 북한은 가족법을 결혼 및 혼인관계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범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북한에서는 혼인가족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의 재산적 측면 보다 인격적 측면이 전면에 나선다고 하는 사회주의 가족법의 일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때문에 상속법은 공민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이 다른 사람(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과 관련한

관계를 규제하는 것인 만큼 민법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이에 근거하여 가족법은 결혼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양육과 교양문제, 가정재산과 관련되는 문제를 규제한다고 하여 가정재산제도라는 독특한 규제대상을 설정하고 있다.⁴⁶⁾ 가정재산관계는 소유관계, 부양관계 및 상속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상속관계를 가족법에 포함시킨 것은 사회주의 가족법 중에서 북한 가족법의 가장 큰 특색이다.⁴⁷⁾

북한 가족법은 남여의 완전한 평등, 모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일부일처제,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

남여평등의 원칙은 문명국가 가족법의 일반원칙이므로 특별한 점은 없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정권수립기에 가족법을 남여평등권에 대한 법령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려고 한 바 있다. 가족법상의 여러 제도 모두가 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구성원간의 완전한 평등과 혼인과 가족관계에서 남성에게 대한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법의 원칙인 일부일처주의와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의 원칙 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편 집단주의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칙은 “은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있다고 가족법 제1조가 규정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사회주의 사회는 개개의 가정이 모여 이룩된 하나의 대가정이므로 사회의 이익은 가정 및

45) 조일호, 공화국 가족법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몇가지 문제, 과학원창립 5주년 기념논문집, 1957, p.69.

46) 가정재산의 의의와 법적 성격은 북한 가족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규율은 가족법에 맡겨져 있다.

47) 러시아연방공화국 민법은 상속을 재산취득의 한 형식으로 보아 제7편에 규정하며, 중국 혼인법은 제18조에 부부 및 부모와 자녀 서로 사이에 상속권이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상속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다.

사정구성원의 이익으로 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은 가정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가족법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고 혁명을 위하여 일을 더 잘하자는 데 있다⁴⁸⁾고 이해한다.⁴⁹⁾

(다) 북한의 민사소송법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1976년 1월 10일 종전의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되어 새로이 입법되었다. 북한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법현상들과 불건전한 요소들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위력한 계급투쟁의 무기를 마련하는 데 민사소송법의 제정의의가 있다고 한다.⁵⁰⁾

이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총 13개장 177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재판관할, 제4장 소송당사자, 제5장 증거, 제6장 소송의 제기, 제7장 재판준비, 제8장 재판심리, 제9장 재판 및 판정, 제10장 제2심재판, 제11장 비상상고, 제12장 재심, 제13장 판결 및 판정의 집행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보위하며 프로레

48)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족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법학논문집 제7집, 1990, p.17.

49)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한 것은 서로 부양해야 할 친족의 범위를 넓혀 그만큼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공산주의 혁명이념과 정면으로 충돌되고 공산주의 경제질서와도 모순되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재수용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민사관계법, 1992, p. 282)

50) 『민사소송법』(1987) p.31. 이 책은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과 부교수 준박사 김정금과 준박사 리황이 집필하고, 리세창과 윤종철이 심사하여 1,200부 한정판으로 출간된 것으로 1987년 3월 23일 발행된 제2판이다.

타리아독재를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해설한 교재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민사사건을 취급처리함에 있어서 재판소, 검찰소, 집행기관 및 기타 소송관계자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의 역할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가 된다.⁵¹⁾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는다.

(i) 법원의 직권주의

북한의 민사소송절차는 철저한 직권주의에 지배되어 소송심리의 진행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법원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원의 직권주의는 우선 당사자처분주의의 배척과 변론주의의 배척으로 나타난다. 먼저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보면, 소송당사자들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가 그를 접수하여 소송이 진행된다. 특히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들이 재산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제하기도 한다.⁵²⁾

소송의 종료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는 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화해에 의하여 소송수속을 끝맺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포기나 당사자들의 화해신청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원고는 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51) 위 책 p. 9.

52) 『민사소송법』(1987) p.12.

(ii)검사의 민사재판 감시

북한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검사가 여러가지 형태로 일반민사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검사가 법원과 마찬가지로 소송당사자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공화국검찰소는 우리 당 사법정책의 집행자이며 준법성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사소송의 담당자이다⁵³⁾”라고 하는 명제에서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검찰에게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이면서도 법령의 정확한 준수집행을 감시하는 국가의 대표자라는 지위가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검사는 민사재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집행에 무조건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온갖 침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하며, 법규준수집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수립하는 기능을 행한다고 한다.⁵⁴⁾

(iii)인민재판

북한의 민사소송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 이외에 일반대중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첫째 인민참심제와 재판소선거권이 있다. 제1심법원의 구성에는 판사 이외에 인민참심원이 참여한다. 그리고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소구성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둘째 변론준비의 단계에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현치료해, 현장검증의 방법으로 통하여 인민대중을 소송활동에 적극 참여시킨다.

셋째 사건의 심리자체에 일반대중을 관여시킨다. 즉 법원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기 앞서 당사자들로부터 마지막 말을 듣는데, 그에 이어 노동자·농민 대표의 말을 들어야 한다.

53) 『민사소송법』(1987) p.36.

54) 위의 책 p.38.

(iv) 김일성 교시의 절대성

북한의 민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체법이든 절차법이든 실정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그 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사법정책이 최고의 기준이 된다. 검사가 민사재판에 관여하는 것과 재판이 위의 지고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판결이 확정된 되에도 아무런 기간의 제한없이 비상상고가 허용되는 것도 이 기준에 어긋나는 재판의 효력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4) 북한의 형사법

형사법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형사실체법과 형사실체법에 정하여진 형벌의 구체적 실현절차를 규정한 형사절차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북한도 형사실체법인 형법과 형사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일단 형사법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50년 3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이래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북한의 형사법은 계급적 본질과 혁명전통의 계승이라는 기본적 이념을 유지하여 개인 인권의 보호라는 자유민주주의 형사법의 이념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이러한 계급적 본질과 혁명전통의 계승이라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형사법은 자유민주주의 형법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하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색을 살펴본다.

(가) 북한 형법의 특색

북한 형법의 가장 큰 특색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아무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많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에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을 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의 권력수단인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개념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행한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북한 형법 제7조는 범죄를 정의하기를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의하여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라고 하였고, 제8조는 “본법 각칙에 규정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한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객관적인 범죄의 구성요건 보다는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주관적인 요소에 가벌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은 유추해석을 허용한다.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유추해석제도에 관하여 “공화국 형법 제15조는 범죄와의 투쟁을 철저히 권유해야 한다는 당의 형사정책적 요구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는 유사한 범죄와 투쟁하기 위하여 유추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유추란 공화국 형법에 직접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종류와 사회적 위험성을 보고 가장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근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위를 확정하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⁵⁵⁾ 또 북한의 형법은 형법의 소급효까지를 인정하여 당과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의 두번째 특색은 형사소추시효제도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형사소추시효제도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추

55) 金圭昇,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刑事法制』, 일본 社會評論社, p. 303.

시효란 범죄자를 적발하였는가 적발하지 못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형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공화국 형법에서는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김일성주석은 민족반역죄를 비롯한 반혁명범죄자에 대하여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사건을 기각하는 일없이 언제든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반역자, 간첩, 파괴분자, 기타 적대분자에 대하여는 사소한 관대도 보일 수가 없고 형사소추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⁶⁾

북한 형법의 또 다른 특색으로는 반혁명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소수의 계급적 적대분자와 낡은 사상, 개인이기주의에 물든 자만이 사회주의 제도를 침해하고 혁명과 건설을 저해하는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혼적을 없애고,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도 해당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범죄자에 반대하는 전인민의 투쟁과 전문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고, 전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활동에 반대하고 저해하는 적대분자와 범죄자를 돕는 행위로서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대책으로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한다.⁵⁷⁾ 그리고 반혁명범죄에 대한 은닉행위, 불신고행위, 방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

(나) 북한의 형사소송법

북한 형사소송법은 김일성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북한의 정치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56) 金圭昇, 앞의 책, p. 388.

57) 金圭昇, 앞의 책, p. 347 ; 김근식, 『형법학 I』 p. 151.

수단의 하나라고 본다. 이 법은 프로레타리아계급의 적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기타 모든 범죄현상들과 철저히 투쟁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일부 낙후한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의 잔재를 뿌리 뽑고 그들을 교화 개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광범위한 군중을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검사는 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재판소에서 직접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상해죄나 폭행·모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판소에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재판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 밖에 재판소는 기소장의 기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개시전 절차에서 재판소의 의견으로 그 기소장을 정정변경하여 새로운 공판회부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공판에 넘길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북한 형사소송법은 이를 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둘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부인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私訴制度를 인정한다. 범죄로 인하여 손해 또는 불이익을 받은 자는 피소자의 행위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제기 이후 공판심리의 개시전에 사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소는 그 청구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당해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리한다.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더라도 심리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일반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소와 달리 소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소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는 사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로서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나 사소원고는 단순히 공판절차의 참가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검사 및 피소자 또는 그 변호인과 더불어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소가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자유롭게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45조)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백의 증거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전문증거나 임의성없는 진술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심지어 불법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강요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규정도 없으며 피소자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북한의 경제법

1992년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제2장 제19조 내지 38조에서 북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 및 계획경제에 의거하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가리킨다. 즉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개인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이에 반하여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고,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기업,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이외에 개인소유가 있으나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과도기적으로 협동단체소유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허용하지 않는 결과 북한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그리하고 북한 헌법은 세금의 전면폐지를 자랑하고 있다.

둘째 자립적 민족경제는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며,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제26조)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질서의 또 하나의 기본원칙은 계획경제이다. 즉 북한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고,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현하여야 한다.(제34조)

북한에 있어서의 경제계획은 법령으로 채택되어 직접 법적 효력을 가진다. 경제계획의 수립은 예비수치작성, 통계수치작성, 계획초안작성 및 계획확정의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최종단계에서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고인민회의에서 계획초안을 의결하여 확정한다.⁵⁸⁾

그러나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표어 아래 폐쇄적인 길을 걸어온 북한

58) 오관치, 북한의 경제계획의 전개과정과 성과, 『북한의 경제』, 1990, 을유문화사, p.124.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 채택된 것이 합영제도이었다. 그러나 합영제도는 1972년 북한사회주의 헌법의 기본원칙인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계획경제의 정신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내지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 제10호로 합영법을 제정 시행하고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 5일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6) 북한의 보건환경법

북한은 분단 이후 사회주의 보건이념⁵⁹⁾에 그들의 주체사상을 접목시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를 발달시켜왔다. 북한의 보건의료이념은 1980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인민보건법에서 법제도로 구현되고 있다. 인민보건법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체료제의 실시, 예방의학의 중시와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적 의학기술의 진흥, 위생문화사업에 대한 대중동원, 보건일군의 혁명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일반주민과 보건의료조직이 가장 접근된 의료서비스의 제공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조직의 관료화, 보건의료조직과 그 생산체계에 대한 당의 지배의 극대화, 의약품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반주민에 대한 약초재배와 야생약초채취의 강요 및 정성운동과 같은 의료보건요원에 대한 봉사정신의 고취 등에서 간파할 수 있다.⁶⁰⁾

59) 사회주의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자본주의적 사회구조를 질병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질병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념을 사회주의적 보건이념이라고 한다.

60) 김승조, 북한의 사회보장 및 환경에 관한 법,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세종연구

또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은 규정형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보건의료관계법규는 주로 전문적 기술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들 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보건법에는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의 위반에 대한 처리에 강한 의문이 남는다.⁶¹⁾

한편 북한에서는 환경보호 내지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 사회적 관련성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이론의 전개가 없었다. 특히 북한은 6.25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구조, 원료문제의 미해결 등으로 환경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1986년 환경보호법의 채택 이후 북한은 오래전부터 자연환경의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듯이 과장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역과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환경보호의무, 기관·기업소·단체 및 주민에 대한 일정한 오염발생행위의 금지, 공해 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또는 공해측정기준 등 구체적 집행기준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과 환경오염을 위반한 데 대한 민사상 및 형사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과 구별된다.⁶²⁾

7) 북한의 노동법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부인한다. 그 결과 노동의 무책임성, 노동의욕의 상실, 생산성의 저하 등 역기능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소 편), p.613.

61) 김승조, 위의 책, p.626.

62) 김승조, 앞의 책, p.638.

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노동에 대한 사상교육과 집단의식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노동관에 대한 변화를 꾀하여 노동생활의 의무성을 강조하는 한편, 규범성을 내세워 전 인민의 노동력의 총동원을 모색한다.

1978년 채택되어 현재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법도 그 예외가 아니다. 즉 북한의 노동법은 산업경제구조와 사회변동에 적응하여 노동관리운용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행정사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국가통제와 일상적 감독을 가중시키며, 계속 추진하게 될 경제계획의 수행과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 모두를 최대한 동원하고 최대한 활용하려는 입법의도를 내포하고 있다.⁶³⁾

또 노사관계의 부인을 전제하는 사회주의 노동법이 자본주의 노동법과 같이 노사관계만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노동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국가기관, 기관, 기업소들에서 일하는 로동자, 사무원들 뿐만 아니라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의 로동생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며, 현행 로동관계 문제들 뿐만 아니라 로동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앞으로 로동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에 대해서도 규제한다.⁶⁴⁾ 이러한 규제대상에 따라 북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 로동의 기본원칙, 로동에 대한 공민의 의무와 로동조직,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분배, 로동과 기술혁명, 로동보호와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에 관한 문제 등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노동법의 규제대상과 구성체계를 사회주의적 본성적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의 로동정책적 방침들을 비롯하여 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63)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일성, 사회주의 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사회과학 1979. 6. p.3.

64) 리기섭, 사회주의 로동법은 새형의 완성된 사회주의 로동법전, 사회과학, 1978. 4. p. 2.

규제할 수 있게 설정된 것이라고 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노동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보다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고 주장하면서⁶⁵⁾, 이를 위하여 북한의 노동법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실현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i) 주체사상의 구현

법이란 그 사회의 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표현형식이라고 보는 북한의 노동법은 당연히 계급적 성격과 사명, 사상과 방법론에 있어서도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사상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을 노동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서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개조할 것을 도모한다. 즉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주민을 단결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군중로선 또는 각종 국민운동과 교육을 통해 철저히 인식시켜 노동자를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로 전환시키고 있다.

(ii)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북한의 노동법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이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헌법 제56조는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현실적으로 분배가능한 생산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⁶⁶⁾

65) 리기섭, 앞의 논문, p.3.

(iii) 노동력동원과 노동강제주의

북한노동법의 또 다른 특색으로는 노동력의 동원과 노동강제주의를 들 수 있다. 북한노동법은 노동의 사회성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조직 및 그 동원·효율적 관리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노동권에 앞서 노동의무의 강조, 엄격한 노동규율 및 그에 대한 준수 의무, 계획과업의 초과달성, 국가표준노동정량의 제정 등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노동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노동법에 의하면 공민의 지위는 노동의 성실성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여 노동력동원과 공민의 사회적 지위를 결부시키고 있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력강화를 위한 3대 혁명(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적 조직사업을 잘하며, 노동생산능력의 높은 성장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공민에게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내작업반 및 가내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대중조직방법인 청산리방법 또는 군중노선을 도입하여 노동력동원을 강제하고 있다.

III. 결 론

북한은 그들의 법제정역사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령도 아래 주체사상에 의하여 법제정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상과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법은 Marx - Lenin주의 법학원리에 충실하였던 구소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

66)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45 - 1982)』, 1983, p.967.

제제도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특이한 점은 북한법은 국민의 규범생활을 규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사회주의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범무생활을 강조하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법(학)의 체계는 북한법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근로자 주권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주체사상, 사회주의 다당제, 노동당의 주도적 역할, 권력집중주의, 민주적 중앙주의, 계획경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3년 연구과제중 제1차 연도의 연구결과이므로 제2차 연도에서는 북한의 현행법을 중심으로 그 이론과 내용 및 현실을 연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총서』.
- 金圭昇,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法と司法制度』.
- 金圭昇,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刑事法制』, 일본 社會評論社.
- 김승조, 북한의 사회보장 및 환경에 관한 법,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편).
- 김영래, 북한의 당, 국가체제와 선거제도, 『북한의 법과 법이론』.
-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 『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 김일성, 사회주의 노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사회과학 1979. 6..
- 로동신문, 1970. 11. 3. ; 1971. 2. 4.
- 리기섭, 사회주의 노동법은 새형의 완성된 사회주의 노동법전, 사회과학, 1978. 4..
-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족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법학론문집 제7집, 1990.
- 리영애, 사회주의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론문집 제7집, 1990.
- 김정근·리황, 『민사소송법』, 김일성종합대학, 1987.
- 법제처 편, 『북한법제개요』, 1991.
- 북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1971.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45 - 1982)』, 1983.
- 오관치, 북한의 경제계획의 전개과정과 성과, 『북한의 경제』, 1990, 을유문화사.
- 『정치사전』, 1973.
- 최달곤,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고려대학교

- 법학연구소, 1989.
- 최송화, 북한의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 최종고, 『북한법』.
- 최종고,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
- 홍극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창섭, 『법건설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4.
- 안우형(편), 『우리나라 법의 발전』, 1960.
- 최송하, 북한의 헌법과 통치구조, 최명(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 최종고, 북한의 입법동향과 법생활, 북한연구 3권 1호 1992.
- 홍극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A. Y. Vyshinsky, *Fundmental Tasks of Soviet Law*, 34)의 책.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 deutsche Beziehungen(Hrsg.)*,
Mater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2.
- Dunke Fred, *Das Mehrparteiensystem in der DDR*, Der national Demokrat, 1963.
- G. Brunner, *Einführung in das Recht der DDR*, 2Aufl..
- Hugh W. Babb, *Soviet Legal Philosophy*, 1951.
- M. Cain & Hint, *Marx and Engels on Law*,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 V. I. Lenin, Staat and Revolution, in ; C. Tucker, *Lenin Anthrology*, 1975.